

알기쉬운 特許制度和 節次

〈特許廳 指導課〉

— 承 前 —

7) 再 審

確定된 審決은 法的安定을 爲하여 原則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確定된 審決이 看過할 수 없는 審判節次의 瑕疵나 判斷의 基礎 資料에 重要한 欠缺이 있을 경우에 限하여 그 審決의 取消을 求하는 制度이다.

再審을 請求할 수 있는 사람은 確定된 審決로 不利益을 받은 當事者 또는 不利益을 받게된 利害關係人이며 그 請求는 原則적으로 審決確定後 再審의 事由를 안 날로부터 30日 以內에(但, 審決確定日로부터 3年 以內에) 하여야 한다.

8) 上 告

抗告審判의 審決(再審의 審決도 包含)에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審決이 法令에 違反된 것을 理由로 하는 경우에 限하여 審決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依한 節次에 따라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12) 權利의 管理

工業所有權은 權利者 스스로가 自己權利를 直接實施하고 管理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 與件上 直接 實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權利를 讓渡하거나 또는 實施權을 許與할 수도 있다.

다음에 權利의 讓渡와 實施權許與에 대해서 簡單히 살펴보겠다.

1. 權利의 讓渡

工業所有權은 無體財產權의 一種이므로 이를 自由로 讓渡할 수가 있다.

讓渡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할 수 있으며 登錄原簿에 登錄함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讓渡의 形態는 賣買, 贈與, 交換, 會社에의 現物出者 등 契約에 依하는 경우와 財團法人의 設立行爲와 같이 單獨行爲로 되는 경우가 있다.

商標權의 경우에는 營業과 함께 移轉되어야 하며 聯合商標가 登錄되어 있는 경우에는 聯合商標도 함께 移轉되어야 한다.

그러나 讓渡하고자 하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만을 讓渡할 수 없다.

2. 專用實施權

專用實施權은 特許權者(以下 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包含)의 許諾 即 當事者間의 任意的 契約에 依하여 發生한다.

專用實施權者는 契約에서 定한 範圍內에서 業으로써 그 發明(또는 考案)을 實施할 權利를 獨占할 수 있는데 다만 特許權者 自身도 通常實施權을 가진다는 約定을 할 수가 있다.

專用實施權은 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其他 一般 承繼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特許權者의 承諾없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專用實施權者는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하거나 質權을 設定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特許權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한편 專用實施權者에게는 審判請求權은 없으나 그 權利의 保護를 爲하여 權利侵害行爲의 禁止 또는 豫防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고 아울러 損害賠償請求도 할 수 있다.

專用實施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 또는 處分の 制限은 登錄을 해야만 効力이 發生한다.

3. 通常實施權

通常實施權은 特許權者(以下 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包含)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他人에게 發明(또는 考案)의 實施를 許與하는 것으로서 當事者間의 契約에 依한 實施權의 경우와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當然히 發生하는 法定實施權의 경우 또는 行政處分에 依하여 強制的으로 發生하는 實施權의 경우 등이 있다.

13 審判制度

1. 概 說

概說 審判制度는 工業所有權을 둘러싼 紛爭을 解決하기 爲하여 特許廳에서 行하는 準司法的인 性質을 가진 節次로서 一種의 裁判에 比喩될 수 있는 것이다.

審判의 種類로는 初審인 審判에는 各種 權利에 대한 無効審判, 權利範圍確認審判, 通常實施權許與審判, 訂正許可審判, 分割許可審判과 商標登錄取消審判 등이 있으며, 抗告審判에는 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과 審決不服抗告審判이 있다. 그리고, 確定된 審判 또는 抗告審判의 審決에 對한 再審制度가 있다.

그런데, 1973年 12月 31日 以前에 出願되어 設定된 權利에 關한 審判은 當時의 工業所有權法의 適用을 받으며, 그 以後에 出願되어 設定된 權利에 關한 審判은 現行法의 適用을 받는바 以下에서 說明하는 內容은 現行法에 따른 것이다.

2. 審判請求

審判은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利害關係人에 限하여 請求할 수 있다. 여기에서 利害關係人이라 함은 例컨대 權利侵害를 理由로 告發된 사람은 勿論 當該 權利者로부터 그 權利의 對抗을 當할 念慮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現在 業務上 損害를 받았거나 後日 損害를 받을 念慮가 있는 사람등을 말한다.

審判請求時 提出하여야 할 書類는

- 審判請求書 正·副本 各 1通
-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登記簿謄本 1通
-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委任狀 1通
- 手數料納付領收證
- 其他 證據物 등을 添附하여야 한다.

그리고 各種 審判請求手數料는 다음과 같다.

審判請求料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4,000원
나. 무효심판	4,000원
다. 취소심판	4,000원
라. 재심청구	5,000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4,000원
바. 정정허가심판	4,000원
사. 분할허가심판	4,000원
아. 정정분할허가의무효심판	4,000원
자. 취소처분신청, 통상실시권허여 처분 신청	7,000원
차. 심판(항고, 재심포함)에의 참가신청	3,500원

抗告審判請求料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5,000원
나. 무효심판	5,000원
다. 취소심판	5,000원
라. 거절사정불복심판	5,000원
마. 재심청구	5,000원
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5,000원
사. 정정허가심판	5,000원
아. 분할허가심판	5,000원
자. 정정분할허가의무효심판	5,000원
차. 즉시항고	5,000원

<계 속>